

#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8명)에 대하여 5명(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음.

##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가. 사안의 요지

- ▣ 원고 이OO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민주노동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통합진보당 대표로 활동하였음. 원고 심OO은 원고 이OO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정평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 ▣ 피고 변OO는 '주간 미디어 위치'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심판결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음. 이 글에는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썸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표현이 있음

- 나머지 피고들은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사를 게시·보도하였음. 피고 이△△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심판결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게시하였음.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 소속 기자인 피고 최○○, 김○○은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심판결 별지 11, 12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음.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 소속 기자인 피고 황○○, 한○○, 김\*\*, 박○○은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에 원심판결 별지 13, 15, 16, 17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음

## 나. 사실심의 판단

- 1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다만, 피고 최○○, 황○○, 한○○에 대한 원고들 청구 기각
  -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함
- 원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다만, 피고 이△△, 황○○, 김\*\*에 대한 원고들 청구 기각
  - 1심의 판단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다만,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고 최○○, 한○○에 대하여는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된 피고 이△△, 김\*\*에 대하여는 원고들 청구 기각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변○○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의 트위터 게

시글 등(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임. 이 사건 표현행위에는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용어가 사용됨

#### 나. 다수의견의 요지 (8명) :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함 ⇨ 원심 일부 파기

##### ▣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함

-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됨.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음
-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함

-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이OO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음. 그의 남편인 원고 심OO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음

#### 다. 반대의견 (5명) : 불법행위가 성립함 ⇨ 상고기각 의견

-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인 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도 있음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하여 위 표현이 '순수 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 원고도 주사파라고 지적인 것으로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다수의견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과 배치됨
- ▣ 피고 변OO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
- ▣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 원심이 피고 변OO, 최OO, 한OO의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심OO이 원고 이OO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원고 이OO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원고 이OO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임.

-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 3. 판결의 의의

- ▣ 언론인 등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 사안임
- ▣ 이 판결은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음